

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
☐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
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
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

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	
신고내용	사업의 종류	운행형태	
	신고 또는 변경 사유		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9조·제31조·제49조의9·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·제69조·제93조의9·제93조의15에 따라

☐ 운송약관
☐ 대여약관
☐ 플랫폼운송약관
☐ 플랫폼가맹약관

을 신고(변경신고)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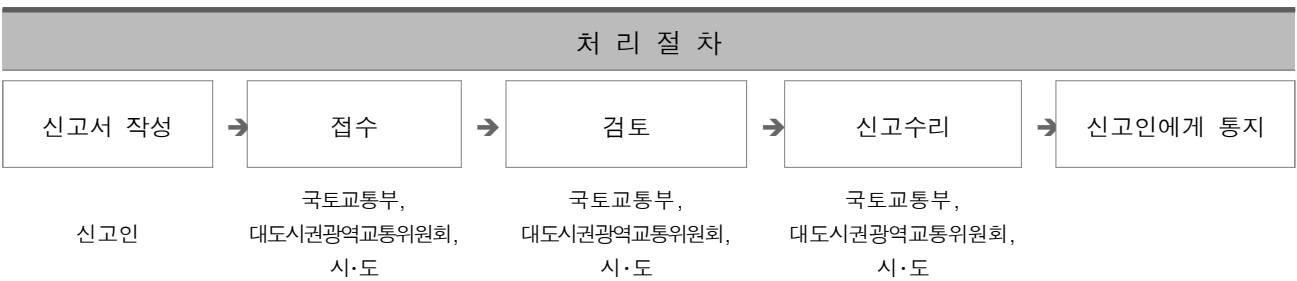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시·도지사

첨부서류	1. 약관 1부(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) 2. 약관의 신·구 대비표 1부(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)	수수료 1,4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